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 7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 기능과 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
- 다.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11조부터 제13조)

라.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바.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재정지원, 위임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4,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회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6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제13조(보호자) ☐ 초·중등교육법 ○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3조(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9.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비영리 교육사업 등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보조금 등
-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운영비로 1,000천원 이상 학교회계 예산 편성 권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교당 1,0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나. 추계 결과

- 학부모회운영비 지원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총 2,614,00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학교수(㉠)	520	522	524	524	524	
학부모회 운영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 학교수의 증감 변화에 따라 추계 결과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김 중 인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학부모회 운영비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2,614,000
	소계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2,614,000
재원 조달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2,614,000
국 비							
시비	소 계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2,614,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520,000	522,000	524,000	524,000	524,000	2,614,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참고 사항

－ 학교수 증감에 따라 비용 추계 변경될 수 있음.